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970호
2. 발 의 자 : 김규남 의원 등 19명
3. 발의일자 : 2024년 6월 7일
4. 회부일자 : 2024년 8월 14일

II. 제안이유

- 농촌 고령화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한편, 대한민국 인구 추계 통계 발표(통계청)에 따르면 75세 이상 서울시 후기고령자는 2050년 181만 8,000명으로 절대적인 후기노령자 인구가 서울에 가장 많을 것으로 확인됨.
- 고령화된 인구구조 안에서 건강한 고령 인구 지원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시급한 상황으로, 고령자에게 가장 중요한 영양 잡힌 식사와 문화생활 등을 영위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 활성화 정책이 대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서울시 폐교를 활용한 노인복지주택 설립 및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해 고령자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인프라 환경 등이 조성
될 수 있도록 발의됨.

III. 주요내용

1.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유·무
상 대부 및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1항).
2. 폐교안에 있는 국유시설을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2.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3. 기 타

○ 입법예고(2024. 8. 20. ~ 8. 24.) 결과 : 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심혁보)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4년 6월 7일 김규남 의원 등 19명에 의해 의안번호 제1970호로 발의되어 2024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도심내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복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을 활용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 안 제9조제1항은 폐교재산에 대한 대부 및 매각할 수 있는 범위에 ‘노인복지주택’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 역시 폐교 재산 내에 있는 국유재산의 활용 범위에 ‘노인복지주택’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의 상위법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목적 규정¹⁾에서 폐교재산을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제4호²⁾).
- 이러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³⁾은 「노인복지

1)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나. (생략)

법」에 따른 복지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⁴⁾.

- 따라서 안 제9조 및 안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은 관련 법령의 해석상 동 조례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된다 할 것인바, 이를 규정한 동 조례안은 개정에 따른 입법 실익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동 개정조례안이 노인복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상위법령의 재기재를 통해 법규 체계 전반에 관한 대민 이해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문 개정 여부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의 하위유형에 노인복지주택이 포함되므로 기존 조례 내에서 동 개정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8989, 2024.8.21.)⁵⁾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이성운(2180-8266)

다. 「노인복지법」

4)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2. (생략)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5)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행정관리담당관-8989, 2024.8.21.)

관계 법령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6607호, 2019. 11. 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8. 20.>

1. “폐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2. “폐교재산”이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한다.
3.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야영장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소득증대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8.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
 2. 해당 폐교가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어업법인
 3. 해당 폐교가 있는 시·군·구에 소재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어촌계
- ② 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요율, 대부기간 및 가격평정(價格評定) 등에 필요한 사항과 매각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단체 또는 사인(私人)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어촌계와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④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한다.

1.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그 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100분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⑤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어업법인

다.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어촌계

2.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그 폐교재산을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제9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시·도 교육감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국유재산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그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으며, 기부 또는 대부기간 종료 후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4. 4. 24.] [법률 제20098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차. 「입양특례법」
-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더. 「의료급여법」
- 러. 「기초연금법」
- 머. 「긴급복지지원법」
-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 서. 「장애인연금법」
-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12호, 2024. 2. 6., 일부개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②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입소비용 및 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③ 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